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223

발의연월일 : 2007. 8. 31.
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 외 7인

1. 제안이유

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나아가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할인을 받고 자 하는 여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제10호).
- 나. 여성 수영회원 중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 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

라. 기 타:

- 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
- (2) 찬성의원 서명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·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,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사용료는 100분의 50, 제10호의 사용료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 행	개	정	안
제 10 조(사용료등의 략) 1.~9. (생략) <u><신설></u>	감면) ①~② (생	하의 가임기	ト 같음) 회원 중 15 여성과 신	세 이상 49세 이 생리를 확인할 수
전액 면제하고, 제	제2호의 사용료는 3호 및 제5호 내지 100분의 50 <u>을 경감</u>	<u>있는 진단서</u> ③	또는 소견/ - 월 회원	서를 제출한 여성 , 제10 년 사용료에 한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찬성의원서명

의 원 명	서 명	म उ
3 23 26 259	(Next	
	Store	
春香香		
3 7 2	Gunn	
14 19 19 19 H	3000	
7-1 1/3 1/1	740	
7 5 2	Mora	
कर् द्वारी	26	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

│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31일 김인식 의원외 7인
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8월 31일

3. 상 정 일 자: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
제5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9. 12)
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인식 의원)

1. 제안이유

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나아가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시설 이용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 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제10호).
- 나. 여성 수영회원 중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).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희배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리가 진행 중인 여성회 원에게 수영장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 른 문제점은 없으나,

공공 수영장이 아닌 일반 수영장에 대하여도 이용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**토 론 요 지** : 생 략

V. **질의답변요지** : 생 략

VI. **심 사 결 과** : 수정가결(내용 : 붙임)

VI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223

제안연월일: 2007. 9.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□ 수정이유

시설이용 여성수영회원의 편의성 도모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². 주요내용

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함(안 제10조제2항제10호).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•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사용료등의 감 면) ①~②(생략) 1.~9.(생략) <신설>	제10조(사용료등의 감면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~9. (현행과 같음) 10.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	제10조(사용료등의 감 면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 1.~9. (개정안과 같음) 10.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③제2항제1호 내지 제2 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 제하고, 제3호 및 제5 호 내지 제9호의 사용 료는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.	③	③ (개정안과 같음)